

#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

- 입안부서 : 교무처
- 공고기간 : 2020년 1월 14일 ~ 1월 21일
- 의견제출 : 붙임의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
- 담당자 : 교회관(kohg@tlbu.ac.kr / 031-960-1018)

## 1. 제정 사유

가. 교직원 윤리규정 신규 제정과 이와 더불어 갑질의 개념,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이 개정 및 시행('18.12.24)됨에 따라 대학 규정 제정 필요

<공무원 행동강령>

제13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

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2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3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4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[본조신설 2018. 12. 24.]

## 2. 주요 내용

제 5 조(지위남용금지) 교직원은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\* 주요내용 제정안 참고

## 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3. 붙임

- 제정 규정(안) 전문 1부.
- 제정의견서 1부.



# 교직원 윤리규정

|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
| 제정일  | 2020.2.1 |
| 개정일  |          |
| 개정차수 |          |
| 담당부서 | 교무처     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(이하‘대학원대학’이라 한다)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 및 직무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사명)**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, 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,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일반적 윤리와 의무

**제 3 조(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자산존중의무)** ① 교직원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원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.

②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
③ 교직원은 대학의 유·무형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,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 4 조(규정준수의무)** 교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원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 5 조(지위남용금지)** 교직원은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**제 6 조(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)** ①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, 성별·종교·국적·장애·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 7 조(성희롱·성폭력금지)**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.

## 제 3 장 학생지도에 대한 윤리와 의무

**제 8 조(교육 및 지도의무)** ① 교원은 학생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.

②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 9 조(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의무)** 교원은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, 학업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 10 조(연구 및 논문지도)** 교원은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대외 활동에 대한 윤리

**제 11 조(교외활동)** 교직원은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표명할 때 대학이나 부설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의견서

|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|  |
|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|--|
| 의<br>견<br>서 | 부서명   |  | 연락처 |  |
|             | 성명    |  | 날짜  |  |
|             | 제정내역  |  |     |  |
|             | 제정의견서 |  |     |  |

※ 작성하신 후에는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